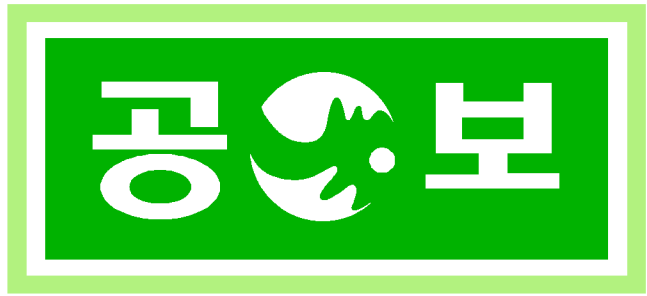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기 관 의 장



제 972 호 2015. 10. 6. (화)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204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진장명촌82B)]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205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진장명촌83B)]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206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진장명촌84B)]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207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진장명촌85B)]8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866호[울산광역시 북구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0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	---

회 관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6 행정7126)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 2015 -204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대표 정순일이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82B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 16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0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계획 승인 내역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 사업주체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나. 성 명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대표 정순일

3) 사업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82B 일원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 업 주 체	◦ 에코하우스(주) 대표 김완섭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대표 정순일	변경
사 업 위 치	◦ 명촌동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지구 82B	◦ 좌 동	변경없음
대 지 면 적	◦ 6,625.30㎡	◦ 좌 동	변경없음
건 축 면 적	◦ 1,428.4971㎡	◦ 좌 동	변경없음
연 면 적	◦ 22,650.6374㎡	◦ 좌 동	변경없음
건 폐 율	◦ 21.56%	◦ 좌 동	변경없음
용 적 륜	◦ 237.37%	◦ 좌 동	변경없음
동 수(주/부)	◦ 3동 / 6동	◦ 좌 동	변경없음
세 대 수	◦ 141세대	◦ 좌 동	변경없음
주 택 형 별	◦ 일반민영 아파트	◦ 좌 동	변경없음
사 업 비	◦ 47,820,098 천원	◦ 좌 동	변경없음

2. 사업시행기간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사업시행기간	2015. 10. ~ 2017.10.	2015. 10. ~ 2017. 12.	변경

3.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동법 제14조 『건축신고』, 동법 제20조 『가설건축물 허가, 신고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된 사항을 모두 포함하며 당초 승인과 같습니다.

4. 승인관련 서류 : 북구청(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건축주택과(☎241-80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 2015 -20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대표 정순일이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진장명
촌토지구획정리지구 83B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
16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0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계획 승인 내역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 사업주체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나. 성 명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대표 정순일

3) 사업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83B 일원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 업 주 체	◦ 에코하우스(주) 대표 김완섭	◦ 케이비부동산신탁(주)대표 정순일	변경
사 업 위 치	◦ 명촌동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지구 83B	◦ 좌 동	변경없음
대 지 면 적	◦ 9,215.30㎡	◦ 좌 동	변경없음
건 축 면 적	◦ 2,092.2344㎡	◦ 좌 동	변경없음
연 면 적	◦ 31,659.2140㎡	◦ 좌 동	변경없음
건 폐 율	◦ 22.70%	◦ 좌 동	변경없음
용 적 륜	◦ 244.97%	◦ 좌 동	변경없음
동 수(주/부)	◦ 3동 / 6동	◦ 좌 동	변경없음
세 대 수	◦ 203세대	◦ 좌 동	변경없음
주 택 형 별	◦ 일반민영 아파트	◦ 좌 동	변경없음
사 업 비	◦ 66,747,317천원	◦ 좌 동	변경없음

2. 사업시행기간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사업시행기간	2015. 10. ~ 2017. 10.	2015. 10. ~ 2017. 12.	변경

3.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동법 제14조 『건축신고』, 동법 제20조 『가설건축물 허가, 신고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된 사항을 모두 포함하며 당초 승인과 같습니다.

4. 승인관련 서류 : 복구청(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건축주택과(☎241-80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 2015 -20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대표 정순일이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진장명
촌토지구획정리지구 84B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
16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0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계획 승인 내역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 사업주체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나. 성 명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대표 정순일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 업 주 체	◦ 에코하우스(주) 대표 김완섭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대표 정순일	변경
사 업 위 치	◦ 명촌동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지구 84B	◦ 좌 동	변경없음
대 지 면 적	◦ 4,546.39㎡	◦ 좌 동	변경없음
건 축 면 적	◦ 1,313.4073㎡	◦ 좌 동	변경없음
연 면 적	◦ 10,989.4073㎡	◦ 좌 동	변경없음
건 폐 율	◦ 28.89%	◦ 좌 동	변경없음
용 적 륜	◦ 184.07%	◦ 좌 동	변경없음
동 수(주/부)	◦ 2동 / 7동	◦ 좌 동	변경없음
세 대 수	◦ 69세대	◦ 좌 동	변경없음
주 택 형 별	◦ 일반민영 아파트	◦ 좌 동	변경없음
사 업 비	◦ 24,903,714천원	◦ 좌 동	변경없음

2. 사업시행기간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사업시행기간	2015. 10. ~ 2017.10.	2015. 10. ~ 2017. 12.	변경

3.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동법 제14조 『건축신고』, 동법 제20조 『가설건축물 허가, 신고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된 사항을 모두 포함하며 당초 승인과 같습니다.

4. 승인관련 서류 : 복구청(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건축주택과(☎241-80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 2015 -20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대표 정순일이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85B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 16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0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계획 승인 내역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 사업주체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나. 성 명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대표 정순일

3) 사업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85B 일원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 업 주 체	◦ 에코하우스(주) 대표 김완섭	◦ 케이비부동산신탁(주)대표 정순일	변경
사 업 위 치	◦ 명촌동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85B	◦ 좌 동	변경없음
대 지 면 적	◦ 10,123.47㎡	◦ 좌 동	변경없음
건 축 면 적	◦ 2,822.8553㎡	◦ 좌 동	변경없음
연 면 적	◦ 27,768.9754㎡	◦ 좌 동	변경없음
건 폐 율	◦ 27.88%	◦ 좌 동	변경없음
용 적 륜	◦ 211.74%	◦ 좌 동	변경없음
동 수(주/부)	◦ 3동 / 6동	◦ 좌 동	변경없음
세 대 수	◦ 182세대	◦ 좌 동	변경없음
주 택 형 별	◦ 일반민영 아파트	◦ 좌 동	변경없음
사 업 비	◦ 58,722,011천원	◦ 좌 동	변경없음

2. 사업시행기간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사업시행기간	2015. 10. ~ 2017.10.	2015. 10. ~ 2017. 12.	변경

3.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동법 제14조 『건축신고』, 동법 제20조 『가설건축물 허가, 신고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된 사항을 모두 포함하며 당초 승인과 같습니다.

4. 승인관련 서류 : 복구청(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건축주택과(☎241-80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5-866호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농식품부의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특례기준(안)이 마련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규칙을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식품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별표 제1항)
- 작업장(별표 제2항)
- 식품취급시설 등(별표 제3항)
- 급수시설(별표 제4항)
- 화장실(별표 제5항)
- 창고 등의 시설(별표 제6항)
- 검사실(별표 제7항)
- 운반시설(별표 제8항)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4. 제정규칙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농수산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농수산물과
 - ☞주소 :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전화번호 : 052-241-8062, 팩스번호 : 052-241-8059

6. 기타사항

개정하고자 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2015- 호

울산광역시 복구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 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 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 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2.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 법인·영어조합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어업회사법인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

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 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 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사)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